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2020년 4월 29일(수) 17: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부	동북아통상과	한철희 과장(044-203-5690) 김기열 사무관(044-203-5694)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박경진 과장(02-2100-7675)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 외교정책팀	윤현주 과장(044-200-2211) 김일석 팀장(044-200-2136)
	복지부	해외입국관리팀	양동교 팀장(044-202-3730)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 적용 가능한 신속통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설에 합의하였음.

□'신속통로'신설로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를 신청하여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됨.

○ 중국 정부는'신속통로'관련,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5.1(금)**부터* 시행할 예정

* 단,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신속통로'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

출국 전	①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진행 ②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수령
중국 입국 후	①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수검 ②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 현재로서는 한·중 정기 항공노선 이용시 5개 지역이'신속통로'적용 가능

□ 한·중간'신속통로'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로서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 및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향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하여'신속통로'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함으로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함.

□ 한·중 신속통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붙임 : 우리 기업인 중국 입국 '신속통로' 관련 Q&A 등.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김기열 사무관(044-203-56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우리 기업인 중국 입국 '신속통로' 관련 Q&A

【 중국 내 '신속통로' 신청 관련 】

Q1.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 외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도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현재 우리 기업인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개)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문가능 **지역 내 소재한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 4.28(화)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총 5개 지역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Q2. 중국 기업만'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을 방문하려는 기업인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경우 중국 내 국내선 환승 또는 육로이동을 통해 목적지(10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는지?

□ 중측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재 양국간 합의한 '신속통로'이용 기업인은 중국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 **단,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신속통로' 적용 기업인의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하여, 필수 격리조치(PCR 및 항체검사 음성)가 완료된 후** 기업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하여 육로로 최종 목적지(장쑤성·안후이성)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 현재 한·중간 항공노선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10개 지역 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합의한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중국 국내선 환승, 육로 이동가능 지역 확대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4.28(화)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총 5개 지역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 비자(사증) 발급 관련 】

Q4.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은 경우 중국 비자(사증) 발급에 유리한지?

□ 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안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방정부는 '신속통로'이용을 신청한 기업인 명단을 검토·심사하여, 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 후, 동 내용을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 모니터링 관련 】

Q5.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 별도의 양식이 있거나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스스로 발열 여부 등을 검진하여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6.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 및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무역협회(1566-5114)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부·복지부가 협조하여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Q7.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는 것인지?

□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중국 입국 및 검역 관련 】

Q8. 중국 도착시 어떻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지?

□ 중국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국 직후 지정된 격리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되어 PCR 검사(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2가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 가능합니다.

Q9. 중국 해당 지역 내 이동은 자유로운지?

□ 현재 양국은 '신속통로'를 이용해 중국에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해당 지역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기업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국 절차 및 격리 최소화 조치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 신청기업이 현지의 방역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과, 신속통로를 활용하여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주거지와 회사(또는 공장)간에만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속통로'운영 관련 】

Q10. '신속통로'는 계속해서 10개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는지?

□ 현재 우선적으로 한·중간 기업교류가 활성화된 10개 지역에 '신속통로'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국은 동 제도의 시범적 운용을 통해 안정성·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고, 양국간 합의된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적용 가능 지역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붙임 1 우리 기업인 중국 입국 '신속통로' 신청 관련 절차

'신속통로'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한중간 비즈니스, 물류, 생산 및 기술 서비스 등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적인 인력 및 동반 가족(이하, '기업인')**

❑ **(적용 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총 10개 지역에 우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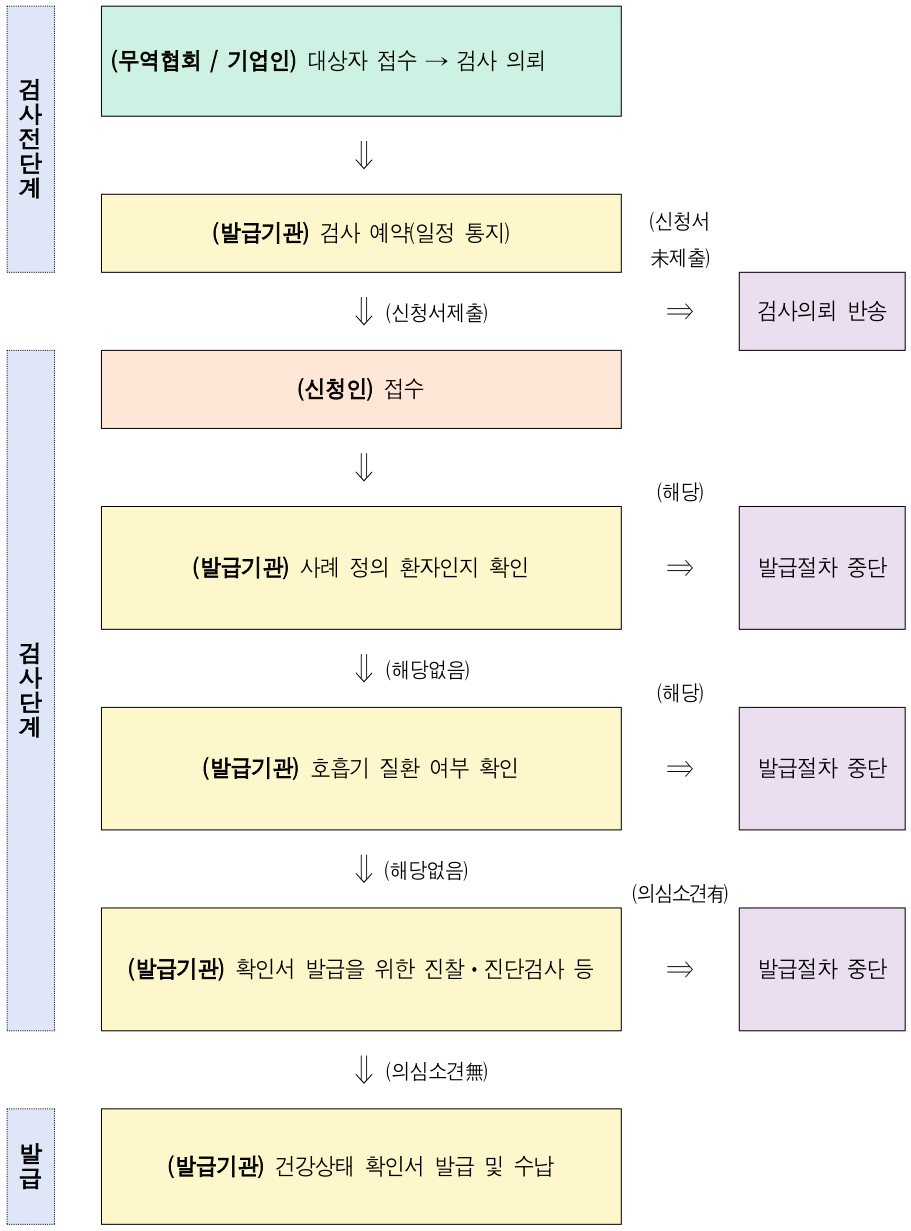
※ 4.28(화)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총 5개 지역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절차	구체 내용 ※ 단, 중국 지방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1	중국내 초청장 신청	○ 신청 기업, 소재한 지방정부의 주관 부처에 '신속통로'가 적용될 '기업인' 명단 및 초청장 신청서 제출 ○ 中 지방정부 주관 부처, ▲필수 인력 및 동반가족 여부 확인 ▲심사 후 「초청장」을 신청 기업에 발급 ▲주한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에 명단 통보
2	중국 비자 발급	○ '기업인', 신청 기업이 발급 받은 「초청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한중국 대사관,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 ○ 주한중국대사관 및 영사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상업 ▲물류 ▲생산 ▲기술서비스 등 분야에 종사할 한국 '기업인' 및 동반 가족에 대해 상응하는 비자 발급
3	건강검진	○ '기업인', 무역협회에 해당 출장자 정보를 제출 → 산업부·복지부 협조를 통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출장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도록 안내 ○ '기업인', ❶출국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 → ❷비행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 ❸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음성 포함 「건강상태 확인서」 취득 (구체 절차 : 붙임 2 참고)
4	입국 및 검역	○ '기업인', ❶중국 입국시 「초청장」 사본 및 「건강상태 확인서」 지참 ❷입국 직후 해당 지방정부 지정 장소 1-2일간 격리 ❸격리 중 코로나19 PCR 검사 및 혈청 항체검사 ○ 신청 기업, 한국 '기업인'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시, ▲지방 정부가 기발급한 「초청장」 소지 ▲자체 차량으로 해당 '기업인'을 격리장소에서 작업장 또는 거주지로 이동
5	동선 최소화	○ 신청 기업, ▲한국 '기업인'의 중국 내 활동기간 동안 현지 정부의 방역 요구 준수 ▲활동 全과정의 효율적인 관리 ▲거주지-회사 등 이동경로 최소화
6	방역책임	○ 신청 기업,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 후 방역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지방 정부의 관리·감독을 수용

❑ **(정례협의) 한중간 '신속통로' 실시 방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조정, 보완을 위해 정례협의 채널 운영(격주 1회)**

- 향후 중국내 방문가능지역 및 이동 방안 등 지속 확대 예정

붙임 2 출국 전 우리 기업인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절차



붙임 3 우리 기업인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신청서

출국 전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신청서

성 명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입국국가(도착지)	

▣ 신청자 정보(영문) ※ 여권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Given Name(이름)		
Family Name(성)		
Date of Birth(생년월일)		
Gender(성별)		○ Male ○ Female
Passport number(여권번호)		
Home Address(집주소)		
Vietnam * 베트남 입국자 경우 작성	Intended Address in Vietnam (베트남 현지 주소)	
	Date of Entry (베트남 입국날짜)	

▣ 수령방법(한글)

☐ 등기 수령	【수령 주소】 우:
☐ 방문 수령	☐ 직접 방문
	☐ 대리 방문(위임장 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항에 해당 시 ✓ 표 해주십시오.

☐예 최근 14일 이내 **신천지 관련 종교행사 등 참석**	☐예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여부**
☐예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기관** 방문	☐예 **원인미상 폐렴 의사 소견 받음**
☐예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접촉(의심)**	☐예 **발열**(37.5℃이상)
☐예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 방문**	☐예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상기와 같이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20. . .

신청자 : _____

의료기관장 귀하

붙임 4 우리 기업인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및 수령 위임장

건강상태 확인서(Medical Certificate) 발급 및 수령 위임장

수임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인 (환자)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발급 범위	의료기관 명칭	
	검사일자	

위임인은 위에 적은 수임인()이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수령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서의 발급·수령에 필요한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1, 위임인 신분증 사본

2. 수임인 신분증 사본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우리 기업인 건강상태 확인서(Medical Certificate) 양식

Medical Certificate

Hospital Number	
First Name	
Family Name	
Date of Birth	
Gender	❍ Male ❍ Female
Passport number	
Home Address	

The above person underwent a physical evaluation by a clinician in an examination room and was reported to have no cough, shortness of breath, sore throat or any respiratory symptoms.
The physical examination revealed a body temperature of____ ℃, blood pressure of ____ / _____ mm Hg, pulse of _____ beats per minute, and respiratory rate of ____ breaths per minute.
On _____ , we confirmed the examinee's specimen tested _____ for COVID-19 by real-time reverse-transcriptase–polymerase-chain-reaction (rRT-PCR) assay. The tested specimen was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

Name of Clinician (signature) : _____ **M.D.**

Medical License number : _____

Date of Sample Collection : _____

Date of Test : _____

Date of Issue : _____

병원 영문 명칭	직인
병원 영문 주소	
Tel: Fax:	

※ The hospital has been designa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s the COVID-19 Diagnostic Examiner.